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력번호 거짓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 상향>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3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 상향(안 제32조 제2항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5.

다.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 상향(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에서는 이력번호의 표시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자나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위반 행위 중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벌칙) ① (생략) <u><신설></u>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현행	개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u> 6의2. (생략)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4. ~ 7. (생략)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u>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u> 9. ~ 12.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6. (생략)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18. ~ 21. (생략) ② (생략)	<u>또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u>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아니한 자</u> 6의2. (현행과 같음) <삭제> 6의4. ~ 7. (현행과 같음) 8. ----- ----- -----<u>아니한 자</u> 9. ~ 12.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 -----<u>아니한 자</u> 18.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육질 등급 및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등의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관련 제도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동의함.

2)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및 축산물 관련 단체 협의회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가 축산물 구매 시 관련 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유럽과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져 소에 대한 이력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8. 12. 시행되었음.

이후 이력관리 대상에 돼지를 포함하여 2014.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력관리 대상에 닭(계란), 오리를 추가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 1. 시행되었음.

【 축산물이력번호 등 표시 현황 】

- 제품 표시 라벨지에 원산지, 이력번호, 등급(국내산) 등을 같이 표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실제 출생 또는 도축 당시¹⁾ 부여된 이력번호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축산물 이력제 단속 개요 】

- 기관 : 농관원, 지자체, 검역본부(수입산)
- 주기 : 설·추석 특별 점검, 수시 점검(기관별 연간 계획 수립)
- 방법 : 거래명세서와 포장지 대조, 위반(바꿔치기) 의심 업체 대상 DNA 동일성 검사 (도축장 채취 시료와 동일성 판별, 연간 6천건) 실시
- 처벌 : 벌금(500만원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 따른 최근 5개년 적발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평 균
건 수	654	610	438	565	554	564.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1) 소의 경우 출생 시 이력번호 부여, 도축·유통 단계에서 동일한 이력번호 사용함. 돼지, 닭, 오리 는 도축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부여

상기의 축산물이력제 단속 현황과 같이 매년 평균 564건의 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3년 위반행위별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그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여 적발되었음.

【 ‘23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별 적발 현황 】

지역 (17개 시도)	위반업체 적발(과태료 처분 실적)						
	계	이력번호 표시 위반		거래내역 신고 위반		장부 기록 등 위반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강원	9	8	1	-	-	-	-
경기	105	103	1	-	-	-	1
경남	39	39	-	-	-	-	-
경북	39	38	-	-	-	-	1
광주	12	12	-	-	-	-	-
대구	20	20	-	-	-	-	-
대전	3	3	-	-	-	-	-
부산	20	20	-	-	-	-	-
서울	100	99	1	-	-	-	-
세종	5	5	-	-	-	-	-
울산	8	8	-	-	-	-	-
인천	12	12	-	-	-	-	-
전남	35	35	-	-	-	-	-
전북	29	29	-	-	-	-	-
제주	8	8	-	-	-	-	-
충남	24	24	-	-	-	-	-
충북	20	20	-	-	-	-	-
계	488	483	3	-	-	-	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이는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 상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처벌수준이 위반행위 대비 경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도축, 수입, 유통·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수준(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거짓으로 이력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함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의 운영 취지가 형해화²⁾되는 측면과 거짓 표시 관련 유사 입법례의 처벌규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2)백화점에 농협도 어겼다…못 믿을 ‘축산물 이력제’ / SBS(2024.10.29.)

국감장 한우도 ‘모두 가짜’…뺨 뺏긴 축산물 이력제 / SBS(2024.10.24.)

‘투플’ 한우 샀는데 육우?...구멍 뚫린 ‘축산물 이력제’ / SBS(2024.10.22.)

【 거짓표시 관련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u> 2. <u>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u>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u>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 <u>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에서는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 또는 미 표시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록 하면서, 동법 제35조에서는 제32조제2항제6호 등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 등에 따른 과태료가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개정안은 ‘거짓으로 이력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수준을 상향하면서 제32조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항을 변경하면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및 현행법률 비교표 】

관련 내용	위반 시 처벌 수준	
	현행 법률	개정 법률안
(제11조제5항) 도축업자의 축산물에 이력번호 표시	【제32조제2항제6호】 (거짓 표시 및 미 표시) 500만원 이하 벌금	【안 제32조제2항제1호 신설】 (거짓 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안 제32조제3항제6호 신설】 (미 표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조의2제4항)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32조제2항제6호의3】 (거짓 표시) 500만원 이하 벌금	【안 제32조제2항제2호 신설】 (거짓 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제34조제2항제9호의3】 (미 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좌 동
(제13조제2항) 수입업자 등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 표시	【제32조제2항제8호】 (거짓 표시 및 미 표시) 500만원 이하 벌금	【안 제32조제2항제3호 신설】 (거짓 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안 제32조제3항제8호 신설】 (미 표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18조제1항) 포장·판매업자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 (제18조제2항) 포장·판매업자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묶음번호 표시 (제18조제4항) 식품접객업자 등의 조리·판매 축산물의 이력번호 영업장 게시	【제34조제2항제17호】 (거짓 표시 및 미 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거짓 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제34조제2항제17호 개정】 (미 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따라서, 현행법 제35조4)에서 인용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 조항이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바, 제35조를 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둘째,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 제35조를 수정할 경우 법 시행 이전 기존 법률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존재할 수도 있는바, 시행 이후 개정 법률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건수와 누적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18조제3항6)에서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판매업자 등이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이나 제32조제3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③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한 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는 반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바,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개정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바,

이에 대한 계도 기간의 필요성과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종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개정안 부칙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된 해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축산물이력제 관련 해외 처벌 규정 】

국가	법	내용	벌금	원화 환산 시 (2025.2.2 기준)
호주	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NLIS)	도축, 가공, 도매, 판매 단계 위반 시	개인: AUD 22,000 법인: AUD 110,000	약 2,000만원 약 1억원
미국	Animal Disease Traceability(ADT)	유통(소매)단계 주 간 이동 위반 시	USD 1,000~10,000	약 145만원~ 1,450만원
캐나다	Canadian Livestock Traceability System(CLTS)	가공, 유통 단계 위반 시	CAD 1,300~250,000	약 130만원~ 2억 5,000만원
일본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03년 6월)	판매업자, 음식점 표시 의무 위반 시 * 장부 기록, 이력번호 표시, 시정명령 등 미 이행시	JPY 300,000 이하	약 280만원 이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2025.1. 22.) 제출

【 미국 】

I. 개요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원산지표시, 등급 판정에 관한 법령을 아래와 같은 체계로 구성하고 있음.
 - 이력관리 :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이 이력관리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은 미국 농무부 시행규칙의 형태로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편제되어 있음.
 - 원산지표시 : 미국 농림부 산하 농산물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이 원산지표시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은 연방 법률의 형태로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에 편제되어 있음.
 - 등급판정 : 미국 농림부 산하 농산물마케팅국이 등급판정을 담당하며, 관련 규정은 미국 농무부 시행규칙의 형태로 연방규정집에 편제되어 있음.
- 아래에서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원산지표시, 등급판정에 관한 각 법령 및 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II. 관련 규정

1.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

- 미국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2013년에 처음 제정된

후 최근 2024년에 개정된 가축질병추적성규칙(Animal Disease Traceability Rule)을 두고 있음.

- 연방규정집 제9편 제1장(농무부 동식물검역국) 제86부(가축질병추적성: Animal Disease Traceability) 이하 제86.1조~제86.5조에 편제되어 있음.
- 이 규칙에 따른 요건은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이 시행·집행함.

○ 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 통제, 근절을 목적으로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 현황을 식별·추적하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됨. 가축 질병 발생 시 해당 가축의 이동현황을 신속히 추적하여 해당 가축의 이동 경로를 봉쇄하고 그 전파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정부 간에 가축 및 축산물을 이동하려면 반드시 이 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세부적으로 특정 유형의 가축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기록 보관을 의무화함.

○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가축과 관련하여, 가축(소, 들소, 돼지, 양, 염소 등)과 특정 종류의 말에 적용됨. 또한 주 내부 또는 주(州) 간 경계를 넘어 운송되는 일부 가축에게도 확대·적용될 수 있음.

○ 이 규칙의 주요 요건은 아래 3가지임.

- 식별요건(Identification Requirements): 가축은 미국 농림부가 인정한 귀표(earmark), 문신, 마이크로칩, 브랜드와 같은 공식 ID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기록보관요건(Record-Keeping Requirements): 가축 소유자, 거래업자, 그 밖에 가축 이동 담당 기관은 가축의 식별, 출발지 및 목적지, 이동 날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의무적 기록 보관기간은 최소 5년임.
- 보고요건(Reporting Requirements): 가축이 주정부 간 운송되는 경우, 해당 가축의 발신자와 수취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관련 당국에 이동 사실을 보고해야 함. 특별히 소와 같은 일부 종의 경우 예방접종기록 및 건강증명서와 같은 추가 주간 이동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미국 농림부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성 정보를 저장·공유하여 동 식물건강검사국 담당관이 질병 발생 시 가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특정 가금류 등 일부 가축은 추적성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음.
 - 또한 저위험군에 속한 가축 이동의 경우 추적성 요건에서 면제되거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주정부 및 연방정부 관계당국은 관련 업체가 추적성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함. 관련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가축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EU 】

I. 개요

- 유럽연합(EU)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들을 시행 중임.
 - 전염성 동물 질병 및 동물 건강 분야의 특정 행위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16년 3월 9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2016/429(동물건강법)⁷⁾.
 - 육상 동물 및 부화장을 사육하는 시설에 관한 규정과 특정 사육 육상 동물 및 부화 알의 추적성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6/429를 보완하는 2019년 6월 28일의 EU 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2019/2035⁸⁾.
- 본 회답서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규정의 법체계 및 추적 관리 관련 내용을 소개함.

II. 주요 내용

1. 「EU 동물건강법」

- 이 법은 동물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규정을 포함하여 동물 및 사람에게 전염 가능한 질병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 대상은 사육 및 야생 동물, 발아 제품(정액, 난자, 배아), 동물성 제품, 동

7)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6 on transmissible animal diseases and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acts in the area of animal health (Animal Health Law), 영문본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6R0429-20210421>

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35 of 28 June 2019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stablishments keeping terrestrial animals and hatcheries, and the traceability of certain kept terrestrial animals and hatching eggs, 영문본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9R2035-20230406>

물 부산물, 질병 확산에 관련된 시설 및 장비임(제1~2조).

표1. 「EU 동물건강법」의 법체계

장	주요 내용
제1부 일반 규정 (제1~17조)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의 기본 규칙과 정의 제공
제2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감시 (제18~42조)	질병 통제 및 근절 프로그램과 관련된 절차
제3부 질병 대비 및 통제 (제43~83조)	질병 발생 시 조치 및 예방 대책
제4부 동물 및 관련 제품의 이동 및 추적성 (제84~228조)	동물 및 관련 제품의 이동에 대한 등록, 승인 및 추적성 체계
제5부 EU 회원국 간 및 국제적 이동 (제229~243조)	수출입 조건 및 검역 요건
제6부 반려동물의 비상업적 이동 (제244~256조)	회원국 간 반려동물 이동에 관한 규정
제7부 비상 상황 관리 (제257~262조)	비상 상황 대응 조치(질병 발생 지역 봉쇄, 질병 감염 동물의 격리 및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위험 지역 및 경로 통제, 감시 및 조기 경보 체계 강화, 회원국 간 및 국제적 협력)
제8부 위임 및 이행 권한(제263~269조)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 및 실행, 긴급 상황 대처와 과학적 발전에 따른 규정 조정
제9부 최종 규정(제270~283조)	본 규정 (EU) 2016/429의 시행과 이전 법률의 폐지를 다루고, 회원국의 법적 조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동물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규정의 발효일과 경과 조치를 명시하여 이행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함.
부속서(I~V)	

- 추적 및 이력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이 법의 제4부(제88조~228조)에 있음.
- 동물 및 제품의 모든 이동은 사전에 등록 및 승인되어야 하며 등록 정보는 유럽연합 통합 관리 시스템(IMSOC)⁹⁾를 통해 모든 이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추적됨. 운영자는 동물 및 제품의 상태, 이동 경로, 목적지에

9)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Official Controls(IMSOC)는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식품 안전, 동물 건강, 식물 건강, 사료 안전 등과 관련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임.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함.

- 모든 이동 관련 문서는 최소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전자 형식 및 물리적 형식 모두 가능함. 관련 당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서 및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함.
- 모든 동물과 관련 제품에 대해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추적성을 보장하고 QR 코드 및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이동 기록을 자동화함.

○ 기록 보존 실패 또는 데이터 누락 시 벌금 또는 이동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구체적인 벌칙 내역은 회원국이 정하여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제268조).

표2. 「EU 동물건강법」 제4부(동물 및 관련 제품의 이동 및 추적성)의 체계

절	장	주요 내용
제1절 육상 동물, 생식 제품 및 동물 유래 제품 이동	제1장 일반 규칙 (제84~107조)	○ 동물 및 관련 제품 이동에 대한 기본 규칙과 위생 조건 ○ 이동 과정에서의 등록, 승인, 및 추적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 관련 문서 보관 및 정보 공유 규칙 포함
	제2장 동물 이동 (제108~123조)	○ 육상 동물의 국내 및 회원국 간 이동 규칙 ○ 건강 인증, 질병 예방 조치, 이동 제한 조건 명시 ○ 이동 중 질병 발생 시 방역 및 통제 절차 포함
	제3장 생식 제품 이동 (제124~154조)	○ 정자, 난자, 배아 등 생식 제품의 이동 조건 및 인증 절차 ○ 이동 전후의 위생 조건과 안전 관리 요구사항 ○ 생식 제품의 추적성과 기록 관리 방법 명시
	제4장 동물 유래 제품 이동 (제155~156조)	○ 동물 유래 제품의 이동 시 적용되는 기본 규칙 ○ 제품의 이동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및 위생 관리 요구사항
	제5장 이동 전후 검역 및 통제 조치 (제157~171조)	○ 이동 전후 건강 검사 및 격리 조치 요구사항 ○ 동물 및 제품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방역 관리
제2절 수생 동물 및 관련 제품 이동	제1장 일반 규칙 (제172~176조)	○ 수생 동물 및 관련 제품 이동에 관한 기본 원칙 ○ 이동 시 적용되는 위생 규칙 및 예방 조치 명시
	제2장 수생 동물 이동 (제177~192조)	○ 수생 동물의 이동 제한 조건과 질병 예방 조치 ○ 국내 및 EU 간 이동 시의 방역 및 안전 관리 요구사항
	제3장 수생 동물 유래 제품 이동 (제193~226조)	○ 수산물 및 수생 동물 유래 제품 이동 시 위생 조건 ○ 안전성 확보 및 기록 관리 절차 포함
제3절 기타 동물 및 관련 제품 이동	제1장 기타 동물 (제227~228조)	○ 육상 및 수생 동물이 아닌 기타 동물의 이동 규칙 ○ 이동 조건과 관련된 추적성 및 기록 관리 규정

2. 「EU 집행위원회 위임 규정 제2019/2035호」

- 이 규정은 EU 내 주요 동물군인 소, 돼지, 개, 고양이, 가금류 등 육상 동물 및 부화장의 등록, 승인 및 추적성 요건을 보완함. 총 89개조와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소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제38조), 이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려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함.
 - 특정 목적을 위한 소 사육자는 식별 요구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대체 식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39조).
 - 전통적인 문화적, 스포츠적 용도로 사육되는 소의 식별 방법과 관련된 특별 규정과 절차를 다루고 있음(제40~41조).
- 돼지를 사육하는 운영자가 돼지에게 귀표, 전자귀표 또는 문신을 통해 식별 정보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출생지 또는 공급망의 마지막 장소에서 적용해야 함(제52조).
 - 공급망 내에서 이동하는 돼지에 대해 식별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제53조).
 - 특정 목적을 위한 사육자에 대해 식별 요건 면제를 허용함(제54조).
 - 회원국이 식별 방법의 승인을 담당하고, 관련 절차를 설정해야 함(제55조).
- 말의 생애 전반에 걸쳐 유효한 식별 문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제65조).
 - 운영자는 동물을 이동할 때 해당 문서를 항상 동반해야 함(제66조).
 - 동물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 운영자는 해당 문서를 발급 기관에 반환해야 함(제66조).
-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시키는 운영자는 해당 동물을 식별하기 위해 이식형 트랜스폰더¹⁰⁾를 사용하고(70조), 이동

10) 트랜스폰더(Transponder)는 전자식 식별 장치로, 보통 동물의 경우, 트랜스폰더는 주입형이나 이식형으로 사용되며, 동물의 몸 안에 삽입되어 고유한 식별 번호나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무선 주파수(RFID)를 통해 읽을 수 있음. 이 방식은 식별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 바코드처럼 물

시에는 규정에 맞는 식별 문서를 동반해야 하며(71조), 상업적 이동의 경우에는 추적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72조).

- 앵무새를 사육하는 운영자가 동물을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할 때, 다리 고리, 주입형 트랜스폰더 또는 문신을 통해 개별 식별을 해야 함. 또한, 운영자는 트랜스폰더가 승인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도 이를 제공해야 함(제 76조).

리적인 접촉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함.

표3. 「EU 집행위원회 위임 규정 제2019/2035호」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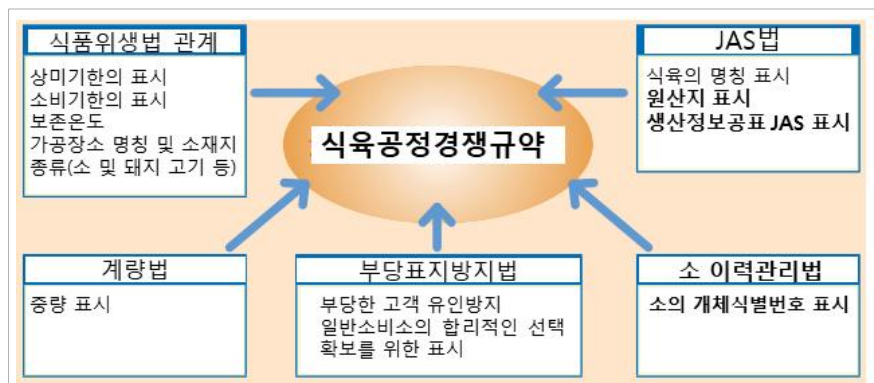
부	절	장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 1 절 주제 및 범위	제 1 장 범위(제 1 조)
		제 2 장 정의(제 2 조)
제2부 등록, 승인, 등록부 및 기록 보관	제 1 절 등록 및 승인	제 1 장 운송업체 등록(제 3 조)
		제 2 장 시설 승인(제 4~8 조)
		제 3 장 운영자 및 시설 의무(제 9~17 조)
	제 2 절 관할 당국이 유지하는 등록부	제 1 장 등록된 시설의 등록부(제 18~20 조)
		제 2 장 승인된 시설의 등록부(제 21 조)
	제 3 절 기록 보관 의무	제 1 장 일반 시설 운영자의 기록 보관 의무 (제 22~32 조)
		제 2 장 부화장 운영자의 기록 보관 의무(제 33 조)
		제 3 장 등록된 운송업체의 기록 보관 의무 (제 34 조)
		제 4 장 조립 작업 운영자의 기록 보관 의무 (제 35~37 조)
제3부 육상 동물 및 부화 알의 추적성	제 1 절 소 사육 동물의 추적성	제 1 장 식별 수단 및 방법(제 38~41 조)
		제 2 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제 42~43 조)
	제 2 절 양 및 염소 사육 동물의 추적성	제 1 장 식별 수단 및 방법(제 45~48 조)
		제 2 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제 49 조)
		제 3 장 이동 문서(제 50~51 조)
	제 3 절 돼지 사육 동물의 추적성	제 1 장 식별 수단 및 방법(제 52~55 조)
		제 2 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제 56 조)
		제 3 장 회원국 내 이동 문서(제 57 조)
	제 4 절 말 사육 동물의 추적성	제 1 장 식별 수단 및 방법(제 58~63 조)
		제 2 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제 64 조)
		제 3 장 단일 평생 식별 문서(제 65~69 조)
	제 5 절 기타 육상 동물의 추적성	제 1 장 개, 고양이, 족제비(제 70~72 조)
		제 2 장 낙타류 및 사슴류 동물(제 73~75 조)
		제 3 장 사육 조류(제 76 조)
		제 4 장 이동 서커스 및 공연 동물(제 77~79 조)
제 6 절 부화 알의 추적성	단일장: 부화 알 요건(제 80 조)	
제 7 절 EU 내 반입 후 동물의 추적성	단일장: 소, 양, 염소, 돼지, 말, 사슴, 낙타류의 반입 후 요건(제 81~83 조)	
제4부 경과 조치	제 84~89 조	
부속서 (I~III)		

【 일본 】

I. 개요

- 일본은 소의 이력관리를 위한 법률로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¹¹⁾을 두고 있고, 원산지표시 등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¹²⁾을 두고 있음.
-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 이력관리법)은 2001년 발생한 광우병 문제가 계기가 되어 제정된 법률임. 소를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므로 판매 중인 모든 일본산 소고기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음.
-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이하,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JAS법)은 규격과 품질표시기준을 정함. 품질표시기준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의무제도로 원산지표시 등을 포함함.¹³⁾

[그림] 식육 표시 관련 법률



출처) 일본 전국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 <<https://www.ajmic.or.jp/kumiai/2010pdf/p3-4.pdf>>

11) 牛の個体識別のための情報の管理及び伝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https://laws.e-gov.go.jp/law/415AC0000000072>>

12) 日本農林規格等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175>>

13) 農林水産省, “厳格な「和牛」表示の徹底について”

<https://www.maff.go.jp/j/study/katiku_iden/03/pdf/data3.pdf>

Ⅱ. 주요 내용

○ 「소 이력관리법」

- 동법은 소를 개체식별번호에 따라 관리하고 생산·유통단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판매 중인 모든 일본산 소고기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함. 소에 대한 귀표 장착, 출생부터 소고기가 될 때까지의 이력정보의 신고·기록·보존, 기록정보 인터넷 공표 등을 정함.
- 법률의 적용 대상인 소의 종별은 흑모화종(黒毛和種), 갈모와종(褐毛和種), 일본단각종(日本短角種), 무각화종(無角和種)과 이들의 교잡종임.

[참고사항] 일본산 소고기(일본명: 와규)의 표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농림수산성이 마련한 '와규 등 특색있는 식육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¹⁴⁾과 일본 전국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¹⁵⁾가 마련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¹⁶⁾(이하, 자율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동 자율규정에서 와규로 표시할 수 있는 소 품종은 ① 흑모화종, ② 갈모와종, ③ 일본단각종, ④ 무각화종, ⑤ ①~④ 품종간 교배에 의한 교잡종, ⑥ ⑤와 ①~⑤의 교배에 의한 교잡종임.
- ⑤와 ⑥의 교잡종을 와규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와규간 교잡종'인 품종조합으로 표시함.¹⁷⁾

14) 農林水産省, “和牛等特色ある食肉の表示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s://www.maff.go.jp/j/study/katiku_iden/06/pdf/ref_data2.pdf>

15) 전국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는 1966년 3월 전국 46개 광역자치단체 식육사업협동조합연합회에 의해 설립됨. 연합회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식육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식육판매업자를 기반으로 식육 유통단계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16) 全國食肉事業協同組合連合會, “食肉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

<https://www.jfftc.org/kiyaku/pdf/c10_H_meat.pdf>

<<https://ajmic.or.jp/kumiai/2013pdf/p73-92.pdf>>

17) 農林水産省, “厳格な「和牛」表示の徹底について”

<https://www.maff.go.jp/j/study/katiku_iden/03/pdf/data3.pdf>

○ 「JAS법」

- 「JAS법」은 JAS 규격과 품질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생산정보공표 소고기의 JAS 규격
 - 제정 경위: 광우병 발생과 식품표시 사건 등에 의해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식품표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식탁에서 농장까지 이력을 표시하는 시스템 정비'로 식품 생산이력에 관한 정보를 제3의 기관이 인증하는 JAS 규격 제도를 마련함.
 - 내용: 생산정보공표 소고기의 JAS 규격은 생산방법과 표시의 기준으로 구분됨. ① 생산방법 기준은 소고기의 생산정보를 마리별로 기록·보관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마리별 또는 20마리 이내의 출하별로 공표함. ② 표시 기준은 '생산정보공표 소고기'라는 명칭과 공표방법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것임.
- 원산지표시 규칙
 - 「JAS법」상 품질표시기준으로 원산지표시 규칙을 정함. 「JAS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식육공정경쟁규약 등에서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원산지표시 규칙의 내용
 - [수입식육] 수입식육은 반드시 원산지명을 표시해야 함.
 - [생체수입가축에서 생산된 식육] 가장 긴 소 사육지가 원산지임.
 - [국내산 식육] 국산,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및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을 원산지로 기재할 수 있음. 지명이 표시되는 경우(마쓰자카규, 고베규 등)는 일본산이라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별칙] 농림수산대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공표뿐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법인은 1억엔 이하)에 처함.¹⁸⁾

18) 農林水産省, “JAS法の規格・表示制度の概要について”

<https://www.maff.go.jp/j/jas/kaigi/attach/pdf/210104_7-9.pdf>

문 의 처

02)6788-5426
